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운전이 서툴거나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있고, 우선주차구획 명칭에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운전이 서툴다는 고정관념을 견고히 하고 여성만을 육아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며, 오히려 남성운전자에게 역차별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음.
- 이에, 우선주차구획 명칭을 “여성”을 삭제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 표시를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바탕에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노인·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의2).
- 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의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한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노인·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하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각각 확대함(안 별표 3).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4월 15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447-701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23, · 팩 스 : 031)375-2875
 - 전자메일 : pk1121@korea.kr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 명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은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8-484호
----------	---------

발의년월일 : 2021년 4월 8일

발의의원 : 한은경 의원

찬성의원 : 장인수, 김명철, 이상복,
성길용, 이성혁 의원

□ 제안이유

- 조례에서 교통약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남성도 운전이 서툴거나 아이를 동반한 경우가 있고, 우선주차구획 명칭에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여성이 운전이 서툴다는 고정관념을 견고히 하고 여성만을 육아의 주체로 인식하게 되며, 오히려 남성운전자에게 역차별의 부담이 될 우려도 있음.
- 이에, 우선주차구획 명칭을 “여성”을 삭제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우선주차구획 표시를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보라색 바탕에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노인·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실질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의2).
- 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의 바탕색을 보라색으로 하고, 여성을 제외한 아이와 동승한 운전자·노인·임산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으로 변경하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각각 확대함(안 별표 3).

□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현행 조례 :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2, 별표 3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을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 및 교통약자가”를 “교통약자가”로 하며, 같은 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 및 교통약자”를 각각 “교통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로, “분홍색 실선”을 “보라색 바닥색”으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

<지주용>

600*600m/m



<벽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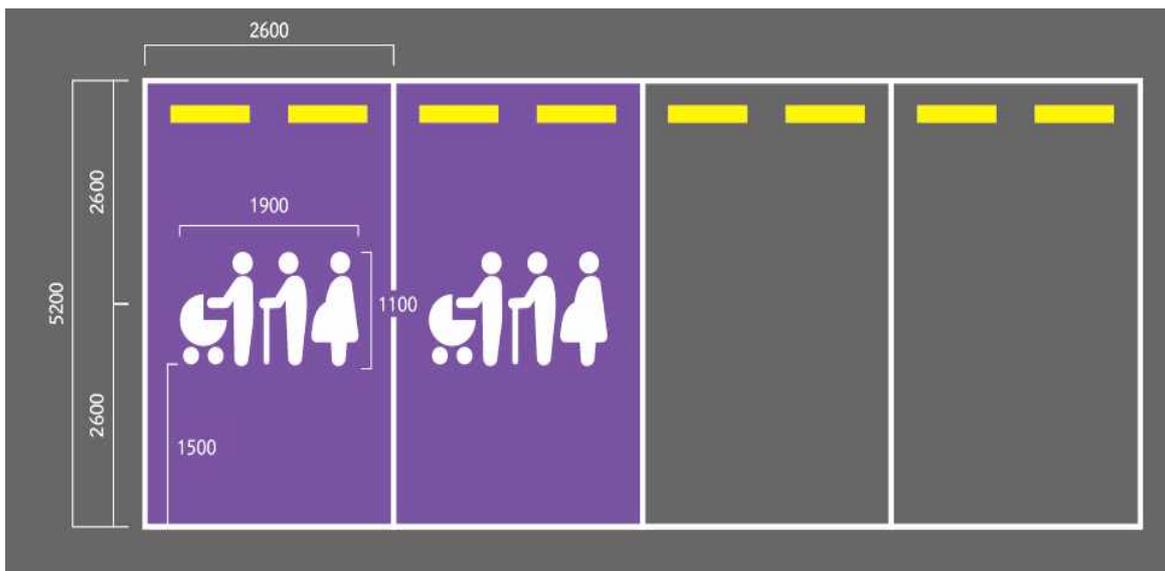


<상단부용(지층)>

900*400m/m



<주차구획선 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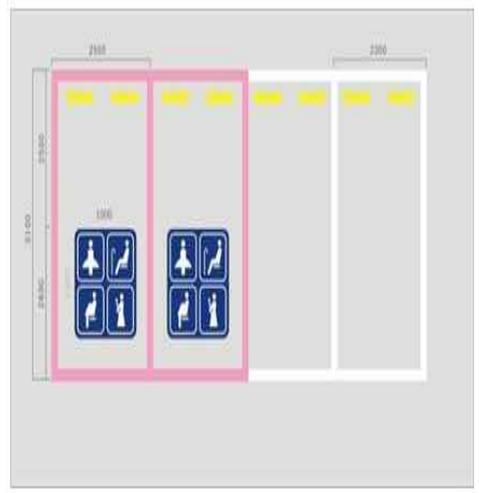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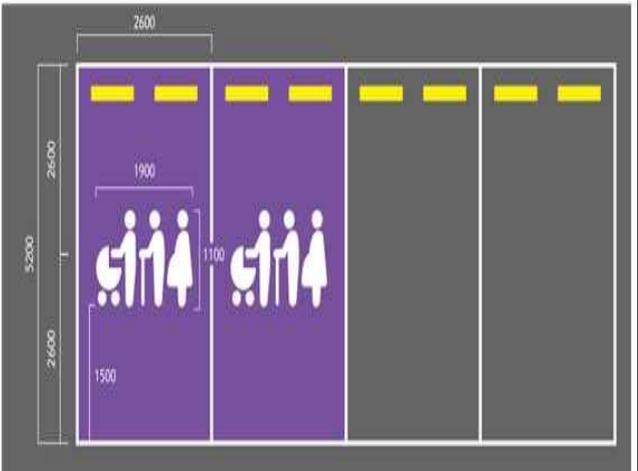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지정된 보라색(C65, M76, Y8, K0)을 사용한다.
2. 글씨: 로고와 맞춰 흰색 글씨만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제 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u>여성 및 교통약자</u>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u>여성 및 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략)</p> <p>③ <u>여성 및 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④ <u>여성 및 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u>분홍색 실선</u>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u>여성 및 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u>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 ----- ----- ----- <u>교</u> <u>통약자가</u> ----- -----<u>교통약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교통약자</u>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u>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의 ----- ----- <u>보라색 바닥색</u>----- ----- ----- <u>교통약자</u> 우선주차구획 마 <u>크</u>-----.</p>

(별표3)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600*600mm</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900*400mm</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구역선 표시></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란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p> <p style="text-align: center;">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600*600mm</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900*400mm</p>  </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구역선 표시></p>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지정된 보라색(C65, M76, Y8, K0)을 사용한다. 2. 글씨: 로고와 맞춰 흰색 글씨만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 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 반 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 분	너 비	길 이
경 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 반 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 장 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다음으로 근접한 곳
-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역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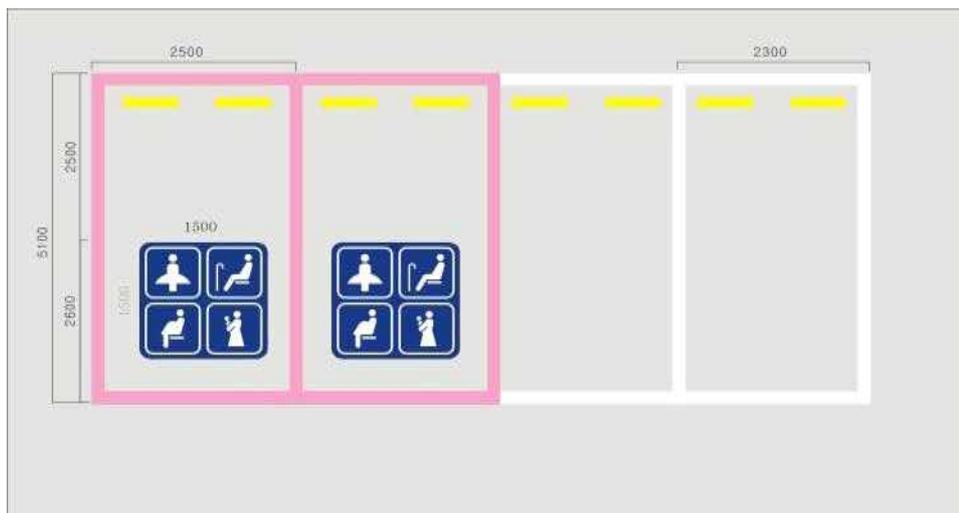
[별표 3]

여성·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6조의2 관련)



〈주차구획선 표시〉



※비고

-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 2. 글씨: 바탕은 노란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란색 글씨)을 사용한다.
-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